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3일, 평창군수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년 11월 6일 상정, 11월 6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회계과장 권혁영)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 변경

- 사업기간 : (변경전) 2020. 1. ~ 2023. 12.
(변경후) 2020. 1. ~ 2025. 12.
- 사업위치 : (변경전) 평창읍 중리 31-4번지 외 20필지, 노람뜰 일원(군유지)
(변경후) 대화면 신리 2018번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
- 사업규모 : (변경전) 연면적 - 2,950㎡, 사업부지 - 13,314㎡
(변경후) 연면적 - 2,950㎡, 사업부지 - 7,822㎡
- 변경사유 : 전문성 확보 및 군비 절감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변경
- 사 업 비 : 110억원(도비 81, 군비 29)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원이상 또는 2,000㎡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 사업내용을 보면

1.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 본 건은 제254회 임시회(2020.03.18.)에서 평창읍 중리 32번지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총면적 6,000㎡, 연면적 2,400㎡,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으나,
- 제277회 임시회(2022.09.23.)에서 평창읍 중리 31-4 외 20필지에 110억원의 사업비로 총면적 13,314㎡, 연면적 2,950㎡, 지상3층 규모의 건물 신축으로 변경승인 받았고

- 금번에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과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8번지로 위치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¹⁾입니다.

<수학아카데미 사업 변경현황>

구 분	당초(' 20.3)	1차(' 22.9)	2차(' 23.11)
위 치	평창읍 중리 32	평창읍 중리 31-4 외 20필지(노람뜰일원)	대화면 신리 2018 (서울대 산학협력부지 내)
사업규모	연면적 2,400㎡ (지상 2층)	연면적 2,950㎡ (지상 3층)	연면적 2,950㎡ (지상 3층)
사 업 비	10,000백만원 (국비 2,000 / 도비 6,000 / 군비 2,000)	11,000백만원 (도비 8,100 / 군비 2,900)	11,000백만원 (도비 8,100 / 군비 2,900)

- 본 사업은 의회 심의시부터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서울대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하고 유사 수학체험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 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면 본 사업이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그동안 위치변경, 수익성검토, 사업추진 방침 결정 등으로 지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관리계획 변경(필요시),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건축기획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 추진은 물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시 조건부 승인²⁾된 사항에 대하여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만큼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이후 발생하는 연간 운영비 부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세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축 예정부지의 무상 임대기간 완료 이후 서울대 측과 무상임대에 관한 이견 및 갈등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협약체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에는 부지매입 방안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존 사업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람뜰의 추진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사업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1부.

2)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

가. 서울대와 평창군과의 구체적인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부지사용문제, 시설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나. 공유재산관련 법령 검토 후 추진

다. 전국지자체, 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학생 유치계획 수립

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 수립

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2023년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			-	-			
소계 (1건 1동)			-	-			
1	답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	△2,950	△11,000,000	2023	평창 수학아카데미 아 건립사업 (변경 전)	
	대	대화면 신리 2018번지	2,950	11,000,000	2025	평창 수학아카데미 아 건립사업 (변경 후)	